

한국과교총 제17대 회장 선거 일정 재공고

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정관 제10조, 12조 및 한국과교총 회장 선출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 일정을 재공고합니다.

다 음

1. 건명 : 사단법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제17대 회장 선출
2. 임기 : 2025. 1. 1. ~ 2026. 12. 31.
3. 입후보자 등록 : 2023. 12. 11.(월) ~ 2023. 12. 13.(수) 17:00 도착분
4. 우편투표 : 2023. 12. 18.(월) ~ 2023. 12. 26.(화) 17:00 도착분
5. 개표 : 2023. 12. 29.(금)
6. 회장취임 : 2025. 1. 1.
7. 등록 방법
 -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2023. 12. 13.(수) 17:00까지 한국과교총 사무처(제17대 회장선거관리위원회)에 접수,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① 입후보자 추천서 (소정 양식, 홈페이지 참조) - 1부
 - ② 입후보자 소견서 (소정 양식, 홈페이지 참조) - 1부(pdf 파일 포함)
 - ※ 소견서는 A4용지 1매의 앞뒷면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작성하고, 소정 양식은 홈페이지 www.kofses.or.kr 참조
8. 기타 : ‘한국과교총 회장 선출규정’에 따라 제17대 회장 선거는 대의원의 우편투표 결과를 총회에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한다.
 -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교총 사무처(02-745-4464~5)로 문의 바랍니다.

2023년 12월 8일

사단법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



한국과교총 제17대 회장 임후보자 추천서

성명	(한글)	(한자)
생년월일		
소속		직위
현주소		
연락처	(휴대전화)	(자택전화)
주요학력		
주요경력		

위 사람을 [사단법인]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제17대 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.

2023. . .

◇ 추천인 3명(대의원)

소속 : _____	성명 : _____ (인)
소속 : _____	성명 : _____ (인)
소속 : _____	성명 : _____ (인)

(사)한국과교총 제17대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귀하

한국과교총 제17대 회장 입후보자 소견서

1. 제17대 회장 입후보자 이력 사항

사진	성명	(한글)	생년월일		
		(한자)			
	주소				
	연락처	(휴대전화)	자택전화		
학 력					
주 요 경 력	기 간	근무처 / 직책	기 간	교육 관련 활동	

2. 제17대 회장 입후보자 소견

※ 뒷면까지 이어서 작성하세요.

한국과교총 회장 선출 규정

사단법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정관 제12조 및 제17조에 의한 회장의 선출 시기 및 선출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선출 시기)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회장 또는 당선자가 사임하였을 때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 시기와 잔여 임기 및 취임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.

제3조 (선출방법)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된 2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대의원의 우편투표(무기명 비밀투표)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개표한다.

② 개표 결과 다수 득표 후보자가 회장이 되며, 동 수일 경우 연장자를 회장으로 한다.

③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(사무처)에 회장 입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입후보 신청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2명을 선출하여 입후보자로 추천한다.

⑤ 회장 입후보자가 한 사람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.

제4조 (선거관리위원회) ① 회장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
② 선거관리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일시, 방법 등을 포함한 선거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제5조 (홍보) 입후보자의 홍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담하며 입후보자 개인은 어떠한 홍보행위도 할 수 없다.

제6조 (기타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7조 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0. 1. 28)

이 규정은 2000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3. 1. 1)

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5. 12. 7)

이 규정은 2005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8. 1. 1)

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2. 9. 1)

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